

2024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2장

사회적 법익

제2장

사회적 법의

사 례
16

차별 금지 - 국적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4-454호	언론사	살구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4월 17일 뉴스면 「한국 중국화 되나? 쿠팡 프레시백 수거 쓰레기 넘쳐.. "똥이나 고양이 사체도" 모두 충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온라인 구매 물품 배송 과정에서 다회용 가방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특정 국가를 비유리적 행위의 상징처럼 묘사하는 '중국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특정 국가는 기사 내용의 핵심 논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중국화'라는 표현은 불필요하게 특정 국가를 연상시키는 비유로 사용되어 독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

언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기사 제목은 독자의 첫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극적인 표현 사용은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나 편향된 시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 제목의 자극적인 표현은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사 례
17

차별 금지 - 장애 차별 표현 ①

의결번호	제2024-133호	언론사	(주)데일리안
대상보도	데일리안 2024년 01월 12일 경제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외식업계 “병어리 냉가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외식 업계의 반응을 보도하면서, 업계의 우려와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기사 제목에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병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권고 이유

해당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와 관련하여 오해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보도준칙과 자율강령에서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언론 보도에서의 표현 선택은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 제목에 사용된 표현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병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 대신 ‘속알이에 전전공공’이란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외식업계 “병어리 냉가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외식업계 “속알이에 전전공공”

사 례
18

차별 금지 - 장애 차별 표현 ②

의결번호	제2024-45호	언론사	프레스시안협동조합
대상보도	프레스시안(Pressian) 2023년 12월 18일 전국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사태 전주시·일부 시의원·언론 꿀먹은 병어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도하면서, 해당 지역 업체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여론 활동을 펼친 일부 시의원 및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기사 제목에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꿀 먹은 병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와 관련하여 오해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보도준칙과 자율강령에서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 제목에 사용된 표현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꿀먹은 병어리’라는 표현 대신 ‘딴청’이란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사태 전주시 · 일부 시의원 언론 꿀먹은 병어리"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전주시·일부 시의원 언론은 딴청"

사 례
19

범죄 묘사-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의결번호	제2024-736호	언론사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4년 07월 11일 SNSFeed면 「"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제21조(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의 제목 및 본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2013년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단 및 방법을 사건 경과에 따라 지나치게 상세히 서술하고 이를 제목으로 부각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 및 제21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고 이유

범죄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달과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 수준의 범죄 묘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넘어선 과도하게 구체적이고 잔혹한 범죄 수법의 공표는 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표현을 기사 제목에까지 사용하여 자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20

성관련 보도 - 성 관련 선정적 묘사

의결번호	제2024-294호	언론사	Turbonews(터보뉴스)
대상보도	Turbonews(터보뉴스) 2024년 02월 10일 「“요즘 경리 팬티라이너 노리는 새끼가 나 말고 또 생겼나 봄”(+텍험 주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여성 용품에 대한 이상 성욕을 드러낸 온라인 게시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성적 일탈 행위가 드러난 게시글과 이에 대한 댓글을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성적 일탈이나 범죄와 관련된 보도라 하더라도, 보도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넘어선 자극적인 세부 묘사는 언론의 품위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성 관련 변태적 행위를 여과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과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21

자살 보도 - 자살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4-394호	언론사	(주)아이뉴스이십사
대상보도	아이뉴스24(inews24) 2024년 03월 06일 사회면 「숨진 공무원 '신상공개' 한 이유 "차 밀렸다"...온라인 카페에 '비판 쇄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직위와 담당업무가 드러난 사진, 직급, 연령대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신상정보들을 함께 공개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권고 이유

해당 보도에서는 사망자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직급, 연령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의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주변 인물들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도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경위와 무관한 신원 정보의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에서 사망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한 행위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사망자의 직위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가 드러난 사진 및 직급을 나타내는 표현을 삭제하여 당사자 특정 가능성을 완화하였다.

사 례
22

자살 보도 -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의결번호	제2024-581호	언론사	경북탐뉴스
대상보도	경북탐뉴스 2024년 04월 26일 종합뉴스면 「바지 벗어서 목맨 피의자 유치장 관리 도마」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경찰서 유치장 내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용된 도구 및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과도하게 상세히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 권고 이유

해당 보도가 수사기관의 구금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 중 사건의 본질을 넘어선 **구체적인 자살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자살 관련 보도의 경우,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일부 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방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는 자살 보도 준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격권 침해 및 모방 자살 유발의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자살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표된 기사 내용을 삭제하고 자살 방법이 드러난 기사 제목을 객관적인 서술 형태로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바지 벗어서 목맨 피의자 유치장 관리 도마	구미경찰서 절도피의자 숨겨

사 례
23

자살 보도 - 자살 미화 및 합리화

의결번호	제2024-220호	언론사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중앙일보 2023년 12월 29일 사회면 「이선균 측 "유튜버 기습 방문, 잔혹한 상황…마음으로만 애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묘사하는 유사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유명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서 성격의 메모 중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묘사한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유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을 고통 해소나 문제 해결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묘사하는 문구를 보도하는 것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독자에게 자살에 대한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일부 독자에게 자살을 대안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방 자살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은 한층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에서 공개한 유서 성격의 메모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유족에게 남긴 유서 성격의 메모 내용을 삭제하였다.

사
례
24

자살 보도 - '극단적 선택' 표현 사용

의결번호	제2024-589호	언론사	주식회사 전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전민일보 2024년 05월 23일 사회면 「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처럼 묘사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자살 보도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므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개인의 능동적 선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표현이 직접적인 단어를 대체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사망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며, 자살 보도 관련 기준에서도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둔 표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표현은 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부 독자들에게 모방 자살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 ‘타살 혐의 없어’라는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타살 혐의 없어

2024년 '극단적 선택' 관련 시정권고 결정 현황 및 변경 사례

Q 시정권고 결정 현황

(단위: 건)

14조 (자살 보도)				
1항 자살 신원 특징	2항 자살 동기 단정	3항		합 계
		자살 미화	극단적 선택	
76	-	65	85	226

Q 변경 사례

언론사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이를 객관적인 사망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체하였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기존 제목을 보다 직관적인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린 A장학사의 극단적 선택 ...해당 학교 입장 논란 가중	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린 A장학사의 극단적 선택 ...해당 학교 입장 논란 가중
②	한수원 20대 직원 극단적 선택 두고 뒷말 '무성'...직장 내 괴롭힘 있었나	한수원 20대 직원 사망 두고 뒷말 '무성'...직장 내 괴롭힘 있었나
③	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男...범행 후 극단선택	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男...범행 후 숨진채발견
④	제주 공원서 대낮 흉기 사망, 극단적 선택 추정	제주 공원서 대낮 흉기 사망, '타살 혐의 없음
⑤	'왕좌의 게임' 캐릭터 아니었어?...AI 챗봇과 대화하던 美 소년, 극단적 선택	챗봇과의 대화가 부른 비극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은?

사 례
25

마약 및 약물 보도 - 약물의 구매 및 사용 방법 묘사

의결번호	제2024-232호	언론사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대상보도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2024년 01월 13일 시민의창면 「텔레그램 속 "현실" 2화」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류의 명칭, 투약 장면, 구입 경로, 가격 등을 상세히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❶ 심의 개요

메신저를 통한 마약 유통 실태를 보도하면서, 마약류의 명칭과 가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 이미지, 판매자로 추정되는 SNS 계정명, 실제 약물 투여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❷ 권고 이유

영상 일부에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구입 경로로 추정되는 판매자 계정, 주요 검색 키워드 및 관련 은어 등이 비식별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되어, 마약 및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에서 공개된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일부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모방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약류의 명칭과 가격이 드러난 메신저 대화 사진, 구입 경로로 추정되는 판매자 계정명, 실제 약물 투여 방법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였다.

사 례
26

마약 및 약물 보도 - 약물의 복용방법 및 환각적 효능

의결번호	제2024-673호	언론사	사단법인 단비뉴스
대상보도	단비뉴스 2024년 04월 26일 청년면 「마약 끊고 싶어도 도움 청할 곳 없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마약류 약품의 사용량, 구입 경로 및 가격, 복용 방법, 환각 효능 등을 상세히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청년층의 마약 중독 실태를 보도하면서, 마약류의 종류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은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복용자의 투약 후 느낌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마약 관련 보도의 특성상, 사실 전달과 마약 중독의 심각성 고발을 위해 일정 수준의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마약 구입 방법, 가격, 투약 방법 및 투약 후 환각 경험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공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에서 공개된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마약 사용의 위험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에게 투약 동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마약류 약품의 사용량, 구입 경로 및 가격, 복용 방법, 환각 효능 등이 포함된 내용을 삭제하였다.

사 례
27

충격·혐오감 -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의결번호	제2024-487호	언론사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4년 04월 03일 국제일반면 「[영상] "비단뱀 살려"...뱀으로 줄넘기한 남성들, 동물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해외에서 논란이 된 동물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살아 있는 동물을 줄넘기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이 담긴 잔혹한 영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동물 학대 장면을 비식별 조치 없이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할 경우, 이를 접하는 독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의 동물 학대 장면은 독자의 불안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문제된 동물 학대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였다.

사
례
28

기사와 광고의 구분 - 의료기관 광고

의결번호	제2024-492호	언론사	주식회사 매경헬스
대상보도	매경헬스 2024년 04월 08일 뉴스면 「관절전문 ○○○○병원 개원 21주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기관명, 의료인명, 상세 주소, 전경 사진 등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권고 이유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과 위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사에 바이라인이 삽입되어 있어, 독자들이 이를 해당 의료기관의 홍보성 기사로 인식하기보다 객관적 기사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의 구성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독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의료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 본문에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의료인명, 상세주소, 전경사진 등을 삭제하고, 기사 제목의 의료기관명을 비식별 처리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관절전문 ○○○○병원 개원 21주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관절전문 Y병원 개원 21주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사
례
29

기사와 광고의 구분 - 의료기기 광고

의결번호	제2024-873호	언론사	(주)머니투데이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2024년 09월 09일 헬스·바이오면 「"노화로 처진 피부, 일반 레이저론 못 살려" 170가지 장비 써 본 의사의 깨달음」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홍보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기관명, 의료인명, 의료기기 제품명 및 사진, 의료인의 의료기기 성능·효과에 대한 보증 및 추천 발언 등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권고 이유

의료인의 이름, 의료기기 제품명과 관련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사에 바이라인이 삽입되어 있어, 독자들이 이를 해당 의료기기의 홍보성 기사로 인식하기보다 객관적 기사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의 구성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독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 본문에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제품명과 사진, 의료인의 의료기기 성능·효과에 대한 보증 및 추천 내용을 삭제하고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노화로 처진 피부, 일반 레이저론 못 살려 " 170가지 장비 써 본 의사의 깨달음	노화로 처진 피부, 교주파 리프팅이 효과적

사
례
30

기사 제목 - 본문과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의결번호	제2024-254호	언론사	(주)머니앤밸류
대상보도	e머니에스(e money S) 2024년 01월 13일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연락 끊고 무단 결근」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상간 의혹으로 피소된 유명 연예인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기사 제목에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기사 본문에서는 불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동반 잠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목에는 불륜 당사자들이 함께 잠적한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제목은 독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독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 "연락 끊고 무단 결근"	강경준 불륜 여성, 잠적해 직장서 해고... "연락 끊고 무단 결근"

